이용 약관

2021년 08월

장성모바일한국유한회사

제 1 장 총칙 5
제 1 조 (목적) 5
제 2 조 (용어의 정의) 5
제 3 조 (약관의 적용 등) 5
제 2 장 계약체결 5
제 4 조 (이용계약의 종류) 5
제 5 조 (이용신청 방법 등) 5
제 5 조의 2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6
제 6 조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6
제 7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6
제 8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7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7
제 9 조 (서비스의 종류) 7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7
제 10 조 (회사의 의무) 8
제 11 조 (이용고객의 의무) 9
제 12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9
제 5 장 업무제한•정지 9
제 13 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9
제 6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11
제 14 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11
제 15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11
제 16 조 (계약의 해지) 12
제 17 조 (요금의 종류) 13
제 18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13
제 19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13
제 20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13
제 21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4
제 22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14
제 23 조 (요금 등의 반환) 14
제 8 장 이용자보호 14
제 24 조 (이용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14

제 25 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14
제 26 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14
제 27 조 (서비스 휴지·폐지 시 대책) 15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5
제 9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15
제 29 조 (번호이동서비스) 15
제 30 조 (신청 및 승낙) 16
제 31 조 (변경전 요금정산) 16
제 32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16
제 33 조 (번호이동 철회) 16
제 34 조 (이의신청 및 처리) 17
제 10 장 청소년 보호 등 17
제 35 조 (청소년이용계약) 17
제 36 조 (청소년 보호) 17
제 37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17
제 11 장 선불통화권 발행 18
제 38 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18
제 39 조 (계약의 성립) 18
제 40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18
제 41 조 (서비스의 이용) 18
제 42 조 (요금의 산정) 18
제 43 조 (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18
제 12 장 임대서비스 19
제 44 조 (임대계약의 성립) 19
제 45 조 (물건의 소유권) 19
제 46 조 (보증금) 19
제 47 조 (물건의 반납) 19
제 48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19
제 49 조 (서비스의 이용) 19
제 50 조 (요금의 산정) 19
제 13 장 침해사고 19
제 51 조 (용어의 정의) 19
제 52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9

제 53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20
제 54 조 (서비스 일시 중단) 20
제 55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20
제 14 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방지 20
제 56 조 (용어 정의) 20
제 57 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21
제 58 조 (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21
제 59 조(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21
제 60 조(부정 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및 권한) 22
제 61 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23
제 62 조(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25
부칙 27
별첨 1.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29
1. Egg 렌탈 29
2. USIM 렌탈 29
별첨 2. 구비서류 33
1. 가입계약시 33
2. 부가서비스 신청시 36
3. 변경신청시 36
4. 일반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시 37
5. 해지시 37
별첨 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39
1.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39
2.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 39
별첨 4. 이용고객 불만처리대책 40
1. 이용고객 불만 처리절차 40
2.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대책 40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장성모바일한국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의거,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케이티 (이하"KT"라 합니다)의 전기통신 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③ "요금제"라 함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과금정책 입니다.

④ "이용신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 (고객동의 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이용계약: 고객이 회사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통신설비 및 서비스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계약
2. 일반이용계약: 제1항을 제외한 이용계약으로 납부방식에 따라 선불과 후불계약 등이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계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에 의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서비스 이용신청 시에는 이용계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첨2]의 구비서류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사원증,재직증명서
3.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4.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 고객의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단,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됨)

② 제1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첨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종이나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단, 제10조(회사의 의무) 5항의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이메일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 어플형태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 받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온라인 혹은 전화로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제 5 조의 2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 [1]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합니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4조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목적 단말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데이터/긴급전화(112,113,119 등)/재난문자/기타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데이터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

④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단, 임대이용계약 의 경우, 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은 회사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⑤ 신규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의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⑦ 고객이 010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010번호 변경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⑧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월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⑨ 부여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삭제)

[1] IMEI: 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의미함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6. 개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고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7.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8. 외국인이 후불상품 1회선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단,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고신용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9. 본 약관 제16조 3항의 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함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2조 1항 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 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2조 1항 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첨3.1]과 같음)
4.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별첨3.2 개인정보보호신청 참조]
5.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외국인
2.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외국인

제 8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①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고객불만유형처리방안객 본인 또는 해당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요금은 [별첨1]과 같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첨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처리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 • 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가입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13조 1항 6호 및 제16조 3항 4~5호에 의거하여 (불법스팸 발송으로)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 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5조 3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 민원 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⑦ 제6항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12개월 이내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4.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⑧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⑩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하고,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 방지인증 서비스와 불법복제 방지시스템(FMS)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⑫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⑬ (삭제)

⑭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 11 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2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고객에 대해서는 회사는 해당업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삭제)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⑥ (삭제)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⑪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2항 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①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업무제한•정지

제 13 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6호, 제7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6조(이용정지 및 재이용)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3.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4.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5.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6.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8.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 (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선불 이용계약의 경우 잔액 존재시 제외)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9.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10.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가능)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12.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나.「청소년 보호법」제19조 1항
 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2항
13.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4.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①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15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 6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 14 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첨2]에서 정한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③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의 해지신청은 가능)
2.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④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⑤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15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첨2] 구비서류 첨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FAX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FAX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고객센터,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첨2]의 해지 시 구비서류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일시정지(발착신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자동복구를 시행합니다. 단,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며 일시정지 기간동안은 비과금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4. (삭제)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본 약관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항의 11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8. 본 약관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항의 12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9. 본 약관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항의 1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10. 본 약관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항의 6호에 따라 이용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11. 본 약관 제6조(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10항에 해당하는 경우
12. 본 약관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항 1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④ 회사는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은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 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 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 년의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4.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존합니다.

⑧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 7 장 요금

제 17 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일반이용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서비스 이용시 음성, 데이터, SMS등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 임대료: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다.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이용료 등
 라.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국제로밍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서비스 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시는 반환되지 않음)
 나. 단말기 유지보수료: 단말기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4. 보증금: 서비스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채권회수가 어렵다고판단되는 경우 부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첨1]과 같습니다.

제 18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19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 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 일로 계산합니다.

③ 요금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④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 20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한 납기일 중 하나를 납입일로 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케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 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21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2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분을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명의자 본인확인을 위한 SMS인증을 실시하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제 8 장 이용자보호

제 24 조 (이용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사업총괄, 고객서비스, 기술 담당별 책임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배치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 25 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이용고객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응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불만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 제28조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용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노력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고객 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첨4]와 같습니다.

제 27 조 (서비스 휴지·폐지 시 대책)

①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대책에 대하여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시,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정보 또는 고객정보 변경 절차를 통해 회사에 마지막으로 접수된 고객정보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9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29 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기존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가진 타사 사용고객은 010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④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⑤ 회사내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일정의 가입비가 발생합니다.
⑥ 회사내 후불에서 선불 또는 회사내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시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전 변경후 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신용카드)번호가 불일치 하는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제 31 조 (변경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후 사업자에게 납부
나.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본 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32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은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변경 가입일 기준 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 (011, 016, 018, 017, 019)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33 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 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④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이 선불 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⑤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34 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 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8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0 장 청소년 보호 등

제 35 조 (청소년이용계약)

①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세미만(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본 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제 36 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 37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1 장 선불통화권 발행

제 38 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① 선불통화권이란 전화카드 방식, 종이형 통화권 방식, 특별한 통화권 발행 없이 고유번호만을 부여하는 방식 등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의 통신서비스 제공 이전에 회원으로부터 요금을 선납 받은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유효기간은 선불카드에 권면에 기재하며 유효기간의 기산일 또는 종료일은 선불카드의 종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표기가 없을 시는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③ 회사에서 발행하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은 210백만원으로 합니다.

제 39 조 (계약의 성립)

① 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권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계약자가 계약사항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가 신고를 접수한 이후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 41 조 (서비스의 이용)

①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사용기간이 경과된 선불통화권의 잔액은 모두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으며, 해당 번호는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④ 사용기간 이내에 선불통화권을 충전할 경우, 충전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됩니다.

⑤ 선불통화권의 잔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이내에는 수신이 가능합니다. (단, 수신자 부담 전화 제외)

⑥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은 정지되며, 수신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간만 가능합니다.

⑦ 수신정지일로부터 30일 경과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되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선불통화전용 전화번호도 동시에 해지 처리됩니다.

제 42 조 (요금의 산정)

①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첨1]과 같습니다.

② 회사의 선불통화권에 대한 요금이 변경될 경우, 기 발행된 선불통화권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요금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3 조 (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①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처리를 위한 고객센터(1899-6086)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합니다.

② 현재 잔액은 ARS, 콜센터 문의를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제 12 장 임대서비스

제 44 조 (임대계약의 성립)

① 고객이 임대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서명날인한 시점부터 임대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45 조 (물건의 소유권)

① 고객은 임대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물건을 회사의 소유로 합니다.

제 46 조 (보증금)

① 회사는 고객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에 고객이 물건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임대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47 조 (물건의 반납)

① 고객이 물건을 반납할 경우 고객은 정상적인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물건이 고장, 훼손 된 경우 회사는 수리비용 및 회수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도난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제 48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임대서비스가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제 49 조 (서비스의 이용)

① 계약자는 물건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물건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 50 조 (요금의 산정)

① 임대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첨1]과 같으며 선불로 수납합니다.

제 13 장 침해사고

제 51 조 (용어의 정의)

① 침해사고란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의미합니다.

② 단말기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아이패드) 등 MVNO 망을 사용하는 기기로 정의합니다

제 52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53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3 제2항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 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 54 조 (서비스 일시 중단)

① 회사는 MVNO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KT와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의하여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KT와 상호접속 또는 망 연동된 타사업자 망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KT 통신망내의 비정상적인 호 폭주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KT의 네트워크 개·보수, 재배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제 55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14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방지

제 56조 (용어 정의)

①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 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④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수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전기통신번호 규격이외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승인한 특수번호 또는 다른 전화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⑥ "변작번호 차단목록" 이란 제 3 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⑦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사 가입자에게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⑧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57 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 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58 조 (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7.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음.

제 59 조(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 일 500 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와 1 일 1,000 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1 일 1,000 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또는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또는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⑩ 본 약관 제61조 제1항 제8~13호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증빙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⑪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⑫ 이용자는 동 약관 제60조 제19항에서 제시된 웹발신문자/국제문자 알림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0조(부정 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고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 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 또는 제 50 조의 8 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59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⑪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⑬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30 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제61조 제7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15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⑮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 메시지 안내, 국제전화 안내 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6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7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제 61 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이용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3.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4.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9.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10.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13. 발신번호변작으로위법에따른조치를받게된경우
14.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5.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6.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조(제61조) 제1항 제1~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본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된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⑦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 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62조(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제공 목적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할인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1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제61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3.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제 63 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64 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 번호변작과 관련하여 본 장을 이 약관의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5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제 38 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변경/추가
 2.USIM 렌탈 ①기본상품의 명칭 변경 : 단기상품
 ②의 중기상품 신설
- 제 14 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방지 추가 및 연관규정 통폐합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을 제 58 조 제 1 항 제 1 호로 통합
 제 10 조 제 13 항의 규정을 제 60 조 제 5 항으로 통합
 제 11 조 제 4 항의 규정을 제 59 조 제 1 항으로 통합
 제 11 조 제 6 항의 규정을 제 59 조 제 3 항으로 통합
 제 11 조 제 8 항의 규정을 제 59 조 제 4 항으로 통합
 제 11 조 제 9 항의 규정을 제 59 조 제 5 항으로 통합
 제 13 조 제 1 항 제 6 호의 규정을 제 61 조 제 1 항 제 1 호로 통합
 제 13 조 제 1 항 제 7 호의 규정을 제 61 조 제 1 항 제 5 호로 통합
 제 13 조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을 제 61 조 제 1 항 제 2 호로 통합
 제 13 조 제 1 항 제 9 호의 규정을 제 61 조 제 1 항 제 3 호로 통합
 제 13 조 제 1 항 제 10 호의 규정을 제 61 조 제 1 항 제 4 호로 통합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을 제 61 조 제 1 항으로 통합
 제 13 조 제 5 항의 규정을 제 61 조 제 5 항으로 통합
 제 16 조 제 3 항 제 3 호의 규정을 제 62 조 제 1 항 제 2 호로 통합
 제 16 조 제 3 항 제 4 호의 규정을 제 62 조 제 1 항 제 1 호로 통합
 제 16 조 제 3 항 제 10 호의 규정을 제 62 조 제 1 항 제 4 호로 통합

이 약관은 2016 년 6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의 단기상품(한국여행 5 일) 내용 및 가격 변경/추가

이 약관은 2017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의 단기상품(LTE 한국여행 5 일,LTE 한국여행 7 일) 추가
- 별첨 1 의 부가책상품(LTE 데이터팩 500M,LTE 데이터 1G,LTE 데이터 2G) 추가

이약관은 2018 년 7 월 12 일 부터시행한다

-제 5 조 제 1 항의 내용 변경

-별첨 1 의 단기상품 (한국여행 7 일, LTE 한국여행 7 일) 내용 변경

-별첨 1 의 단기상품 (LTE 한국여행 7 일 데이터 무제한) 추가

-별첨 2 의 구비서류 내용 변경 및 추가

이 약관은 2018 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의 단기상품(LTE 한국여행 7 일 데이터 무제한) 내용 및 가격 변경/추가

이약관은 2018 년 10 월 5 일 부터시행한다

-별첨 1 의 단기상품(한국여행 7 일,LTE 한국여행 7 일) 가격 변경/추가

-별첨 1 의 단기상품(LTE 한국여행 7 일 데이터 무제한) 내용 및 가격 변경/추가

이약관은 2019 년 3 월 21 일 부터시행한다

-별첨 1 의 단기상품(LTE 한국여행 5 일 데이터 무제한 A) 내용 및 가격 변경/추가

-별첨 1 의 단기상품(LTE 한국여행 7 일 데이터 무제한 A) 내용 및 가격 변경/추가

이약관은 2019 년 10 월 10 일 부터시행한다

-별첨 1 의 상품(장성 33 요금제) 내용 및 가격 변경/추가

-별첨 1 의 단기상품(EGG 10G/EGG 20G) 내용 및 가격 변경/추가

이약관은 2021 년 7 월 1 일 부터시행한다

-제 10 조 제 6 항 내용수정

-제 21 조 제 1 항 내용수정

-제 22 조 제 1 항 내용수정

이약관은 2021 년 10 월 1 일 부터시행한다

-제 13 조 제 1 항 내용수정,제 13 항,제 14 항 내용추가.

별첨1.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1. Egg렌탈

요금제	기본료(일)	보증금	기본제공 서비스	비고
W Free	3,150원	87,500원	데이터 2GB/일 제공	임대단말 내역: 에그본체, 배터리, 파우치(에그 지갑), 충전기

① 기본료: 임대기간 * 기본료(일) 에 대해서 선불 수납. 개통시점부터 일할 계산됨

② 보증금: 임대기간 연장, 단말 미반납, 단말 분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비하여 보증금 선불 수령하며, 단말 반납 시 하자 여부 검토 이후 고객에게 환불 처리함

③ 단말 분실 시 고객부담금

본체	배터리	파우치	충전기
105,000원	17,500원	5,250원	5,250원

④ 단말 훼손 시 고객부담금

케이스	LCD	전지
42,000원	52,500원	31,500원

2. USIM렌탈

①- ①단기상품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 서비스	비고
한국여행 5일	4,000원 (VAT포함)	• 데이터(3G): 100MB • 충전금액: 2,000원 • 사용기간: 5일	• 서비스별 차감 요율: 충전금액에 대해 아래 서비스별 요율로 차감 • 데이터: 20.48원/MB • 중국통화: 66원/분. 단, 국제전화 식별번호는 00345를 사용, 기타 국가 요율은 00345국제전화 약관 준용 • 음성통화: 3.3원/초 • 영상통화: 3.7원/초 • SMS: 22원/건 • LMS: 33원/건 • MMS: 220원/건 • 기술방식: WCDMA(3G),LTE(4G) •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되고 발신이 정지되나, 만료시점부터 15일간 수신은 가능 • 사용기간 만료 이후, 45일 이내 충전 없으면 서비스는 자동 해지
한국여행 7일	9,000원 (VAT포함)	• 데이터(3G): 1,200MB • 00345중국국제전화: 30분(선택시) • 충전금액: 2,000원 • 사용기간: 7일	
		• 데이터(3G): 3,072MB • 00345중국국제전화: 30분(미선택시) • 충전금액: 2,000원 • 사용기간: 7일	
LTE 한국여행 5 일	4,000원 (VAT포함)	• 데이터(4G): 100MB • 충전금액: 2,000원 • 사용기간: 5일	
LTE 한국여행 7 일	9,000원 (VAT포함)	• 데이터(4G): 1,200MB • 00345중국국제전화: 30분(선택시) • 충전금액: 2,000원 • 사용기간: 7일	
		• 데이터(4G): 3,072MB • 00345중국국제전화: 30분(미선택시) • 충전금액: 2,000원 • 사용기간: 7일	

LTE 한국여행 7 일 데이터 무제한	10,000원 (VAT포함)	• 데이터(4G): 300MB/일 소진후 400KB/S 속도제한 무제한 • 충전금액: 2,000원 • 사용기간: 7일	• 서비스별 차감 요율: 충전금액에 대해 아래 서비스별 요율로 차감 • 데이터: 20.48원/MB • 음성통화:미제공 • 영상통화:미제공 • 메시지:수신만 가능(무료) • 기술방식: LTE(4G) • 사용기간중에 300MB/일 제공 소진후 400KB/S 속도제한 무제한 •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되고 만료시점부터 15일간 수신은 가능 •사용기간 만료 이후, 45일 이내 충전 없으면 서비스는 자동 해지
LTE 한국여행 5 일 데이터 무제한 A	9,000원 (VAT포함)	• 데이터(4G): 2GB/일 소진후 3Mbps 속도제한 • 충전금액: 9,000원 • 사용기간: 5일	• 서비스별 차감 요율: 충전금액에 대해 아래 서비스별 요율로 차감 • 음성통화:미제공 • 영상통화:미제공 • 메시지:수신만 가능(무료) • 기술방식: LTE(4G) • 사용기간중에 2GB/일 제공 소진후 3Mbps속도제한 무제한 •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되고 만료시점후에 서비스는 자동 해지 •사용기간 만료 이후, 30일 이내 충전 없으면 서비스는 자동 해지
LTE 한국여행 7 일 데이터 무제한 A	12,000원 (VAT포함)	• 데이터(4G): 2GB/일 소진후 3Mbps 속도제한 • 충전금액: 12,000원 • 사용기간: 7일	
장성 33 요금제	36,300 (VAT포함)	• 데이터(4G): 300M/월 소진후 3Mbps 속도제한 • 충전금액: 36,300원 • 사용기간: 30일 • 통화 무제한(망내) • 문자 무제한	• 서비스별 차감 요율: 충전금액에 대해 아래 서비스별 요율로 차감 • 음성통화:무제한 • 영상통화:미제공 • SMS 무제한 • 메시지:수신만 가능(무료) • 기술방식: LTE(4G) • 사용기간중에 300M/월 제공 소진후 3Mbps속도제한 무제한 •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되고 만료시점후에 서비스는 자동 해지 •사용기간 만료 이후, 30일 이내 충전 없으면 서비스는 자동 해지

EGG 10G	16,500 (VAT포함)	• 데이터(4G): 10GB /월 소진후 200Kbps 속도제한 • 충전금액: 16,500원 • 사용기간: 30일	• 서비스별 차감 요율: 충전금액에 대해 아래 서비스별 요율로 차감 • 음성통화:미제공 • 영상통화:미제공 • 기술방식: LTE(4G) • 사용기간중에 10 GB/월 제공 소진후 200Kbps속도제한 무제한 •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되고 만료시점후에 서비스는 자동 해지 •사용기간 만료 이후, 30일 이내 충전 없으면 서비스는 자동 해지
EGG 20G	24,200 (VAT포함)	• 데이터(4G): 20GB /월 소진후 200Kbps 속도제한 • 충전금액: 24,200원 • 사용기간: 30일	• 서비스별 차감 요율: 충전금액에 대해 아래 서비스별 요율로 차감 • 음성통화:미제공 • 영상통화:미제공 • 기술방식: LTE(4G) • 사용기간중에 20 GB/월 제공 소진후 200Kbps속도제한 무제한 •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되고 만료시점후에 서비스는 자동 해지

①-②부가팩 상품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 서비스	비고
중국전화팩 30분	3,000원 (VAT포함)	• 00345중국국제전화: 30분(1천8백초)	• 단, 국제 전화 식별번호는 00345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사용기간은 별도 연장되지 않으며 기본상품의 사용기간에 따름
중국전화팩 60분	5,000원 (VAT포함)	• 00345중국국제전화: 60분(3천6백초)	• 단, 국제 전화 식별번호는 00345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사용기간은 별도 연장되지 않으며 기본상품의 사용기간에 따름
데이터팩 500MB	7,000원 (VAT포함)	• 데이터(3G): 500MB	• 기본상품 사용고객에 한해, 추가로 데이터팩 상품을 가입하여 서비스 가능 • 사용기간은 별도 연장되지 않으며 기본상품의 사용기간에 따름
데이터팩 1GB	12,000원 (VAT포함)	• 데이터(3G): 1GB	• 기본상품 사용고객에 한해, 추가로 데이터팩 상품을 가입하여 서비스 가능 • 사용기간은 별도 연장되지 않으며 기본상품의 사용기간에 따름
데이터팩 2GB	15,000원 (VAT포함)	• 데이터(3G): 2GB	• 기본상품 사용고객에 한해, 추가로 데이터팩 상품을 가입하여 서비스 가능 • 사용기간은 별도 연장되지 않으며 기본상품의 사용기간에 따름
LTE 데이터팩 500MB	7,000원 (VAT포함)	• 데이터(4G): 500MB	• 기본상품 사용고객에 한해, 추가로 데이터팩 상품을 가입하여 서비스 가능 • 사용기간은 별도 연장되지 않으며 기본상품의 사용기간에 따름
LTE 데이터팩 1GB	12,000원 (VAT포함)	• 데이터(4G): 1GB	• 기본상품 사용고객에 한해, 추가로 데이터팩 상품을 가입하여 서비스 가능 • 사용기간은 별도 연장되지 않으며 기본상품의 사용기간에 따름
LTE 데이터팩 2GB	15,000원 (VAT포함)	• 데이터(4G): 2GB	• 기본상품 사용고객에 한해, 추가로 데이터팩 상품을 가입하여 서비스 가능 • 사용기간은 별도 연장되지 않으며 기본상품의 사용기간에 따름

②-① 중기상품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 서비스	비고
장성300 (3G)	6,000원/월 (VAT포함)	• 사용기간: 30일 • 기본료 차감 200원/일	• 서비스별 차감 요율: 충전금액에 대해 아래 서비스별 요율로 차감 • 데이터: 0.01원/0.5KB(20.48원/MB) • 중국통화: 1.1원/초 • 음성통화: 1.1원/초 • 영상통화: 3.7원/초 •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 기술방식: WCDMA(3G) • 일시정지기본료(VAT포함) : 3,850원(일 128원 차감) • 선불 잔액 소진 시 발신 정지 15일 후 수/발신 정지 30일 (총 45일) 후 직권 해지

②-② 부가서비스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 서비스	비고
장성데이터플러스M 500	10,000원/월 (vat포함)	• 데이터(3G): 500MB • 사용기간: 30일	• 기본상품 사용고객에 한해, 추가로 데이터팩 상품을 가입하여 서비스 가능 • WiFi제공
장성데이터플러스M 1GB	15,000원/월 (vat포함)	• 데이터(3G): 1GB • 사용기간: 30일	
장성데이터플러스M 2GB	20,000원/월 (vat포함)	• 데이터(3G): 2GB • 사용기간: 30일	

③ 충전금액별 사용기간

충전금액	사용기간	수신가능기간	전화번호 유지기간
5,000원	30일	45일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합법 체류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여권으로 가입 시, 3개월 이내에만 사용 가능함
10,000원	60일	75일	
20,000원	120일	135일	
30,000원	180일	195일	
40,000원	240일	255일	
50,000원	360일	375일	

별첨 2. 구비서류

1. 가입계약시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개 인</td><td>본인내방시</td><td colspan="2">대리인 내방시</td><td rowspan="2"></td></tr>
<tr><td>•본인신분증
(공공기관종사자:
공공기관신분증+공공기관재직증명서)</td><td>•명의자시분증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신분증</td><td>•명의자신분증
•위임장(성명)
•서명사실확인원
•대리인시분증</td></tr>
<tr><td rowspan="2">개인사업자</td><td>대표자 내방시</td><td colspan="2">대리인 내방시</td><td></td></tr>
<tr><td>•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td><td>•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신분증</td><td>•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인감날인)
•서명사실확인원
•대리인시분증</td><td></td></tr>
<tr><td>법인(영리)</td><td>•대표자신분증
(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
•사업자등록증 원본
(고유번호증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명원 원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td><td colspan="2">•법인인감날인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4 대보험가입증명서 포함)</td><td></td></tr>
<tr><td rowspan="2">미성년자</td><td>미성년자 단독내방</td><td>법정대리인 단독내방
또는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함께 내방</td><td>제 3 자 대리인 내방</td><td rowspan="2">14 세미만
본인신분증
제출제외</td></tr>
<tr><td>•본인신분증
(법/대)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법/대)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td><td>•본인신분증
• (법/대)신분증
• (법/대)동의서(서명)
• (법/대)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td><td>•대리인신분증
•(법/대)동의서(인감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법/대)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td></tr>
</table>

외국인	•일반 -선불/임대: 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후불: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공관원 -선불/임대/후불: 여권 또는 공관원신분증	
장애법인및 아동복지시설	•법인설립인허가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특수학교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국가기관	•사업자등록증, 기관장명의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국가유공자단체	•사업자등록증, 관련법률에근거한증빙서(법인등기부등본등),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회복지용	•본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 전화(방문확인 등)로 본인 의사 확인 가능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의사 확인 불가능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차상위계층의 경우 다음 증명서 추가 제출 - 개인정보제공및조회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따른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대상자)	
저소득층용		
차상위계층용		

① 가입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구 운전면허증 제외),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수첩 제외), 국가유공자증 (단,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1. 웹 사이트를 통한 가입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및 신용카드 인증을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2. 전자계약서를 통한 가입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②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입시 혹은 혜택만료 후 재신청시에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요금 감면자격이 확인될 경우 요금감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

③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 및 안전행정부를 통해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2. 부가서비스 신청시

① 방문: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② 전화: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확인(전화번호,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밀번호 등)

③ 전자계약서를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사본을 대체 가능함

3. 변경신청시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번호/단말기/
주소변경</td><td>• 개인: 신분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td><td>• 변경신청서 공통</td></tr>
<tr><td>개명, 개칭</td><td>• 개인: 신분증, 호적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td><td></td></tr>
<tr><td>명의변경</td><td>• 개인
- 양수/양도인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 양도인만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수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 양수인만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 법인고객 및 대리인 신청시
- 명의자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신분증(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건강보험증 이나 재직증명서 가능)
-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 불가시 명의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td><td></td></tr>
<tr><td>일시정지 및 해제</td><td>• 개인
<table>
<tr><th>구분</th><th>본인 신청시</th><th>대리인 신청시</th></tr>
<tr><td>방문 신청</td><td>명의자 신분증</td><td>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td></tr>
<tr><td>팩스 신청</td><td>신청서 및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td><td>신청서, 명의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td></tr>
<tr><td>전화 신청</td><td>고객정보 확인 (고객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td><td>고객정보 확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단, 일시정지 해제 시에는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td></tr>
</table>
※ 대리인 신청시,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불가능 시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필요</td><td></td></tr>
</table>

<table>
<tr>
<td></td>
<td>• 법인
<table>
<tr><th>구분</th><th>대표자 신청시</th><th>대리인 신청시</th></tr>
<tr><td>방문 신청</td><td>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택 1, 대표자 신분증</td><td>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td></tr>
<tr><td>팩스 신청</td><td>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공문),</td><td></td></tr>
<tr><td>전화 신청</td><td>대리인 신분증</td><td></td></tr>
</table>
</td>
<td></td>
</tr>
</table>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② 전자계약서를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4. 일반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시

구분	내용	비고
일반통화내역 열람	• 개인 -본인 신청시: 본인신분증,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인용) -대리인 신청시: 본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단말기 휴대(SMS 인증번호 확인용), 또는 SMS 인증번호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기업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	• 전화, 팩스, 우편 신청 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통화내역 신청 이동전화로 전송된 SMS 인증번호가 확인 되는 경우 통화내역 제공 가능 •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본인의사 확인전화를 실시할 수 있음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 이용요금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내역 열람 요청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통화내역의 일부를 삭제한 후 제공 가능 - 방문 신청시: 일반 통화내역 열람과 동일하게 처리 - 팩스 및 우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후 우편, 팩스로 제공 (대리인 신청 및 전화 신청 불가)	

5. 해지시

5.1 방문시

구분		구비서류	비고
일반	본인	• 가입고객 신분증	• 해지신청서(공통) -개인사업자 대리인방문시: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행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외
	대리인	• 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법인	개인사업자	•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	•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외국인(대리인불가)		• 가입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증)	

① 일반의 대리인 방문시 가입고객과 전화통화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가입고객 및 대리인신분증만으로 업무처리 가능(단, 전화통화이력은 별도 관리)

② 전자계약서를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인증 시 신분증사본을 대체 가능함

5.2 팩스, 전화, 우편 요청시

구분	구비서류	비고
일반	• 가입고객 신분증	• 지점으로 보내얄 할 공통 서류 -해지신청서 -해지요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명의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또는 자동이체 계좌 -당일에 지점계좌로 납부한(해지즉납금, 당월 및 미납요금) 입금증 사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공문서	
외국인	• 가입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	

①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구비서류 추가 (방문가입시 대리인 구비서류와 동일)

5.3 그외 예외적인 경우

구분	해지사유	대리인제한	구비서류	비고
일반	사망	가족	• 사망확인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입대	가족	•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웹사이트 내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 단, 입대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기 일시정지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거 군입대 장기일시정지로 인해 감면받았던 감면액 전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입영일자/ 부대조회자료는 www.mma.go.kr 에서 조회 가능
	해외 장기체류	가족	•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형집행중인 자	가족	• 재소증명서	
	행방불명	가족	•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인	법인파산	파산전 대표자	•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① 예외적인 해지 요청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

②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시에는 가족확인서류 추가 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의 범위: 동일한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상 포함된 사람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이혼으로 호적상에서 삭제된 자는 제외)

별첨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1.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구분	내용	비고
대포폰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이용신청 승락을 제한한다.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 2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시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 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중고폰	• 개인명의자 1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을 5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

구분	내용	비고
도용방지	•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 개인정보보호요청

별첨4. 이용고객 불만처리대책

1. 이용고객 불만 처리절차

① 고객센터의 접수/처리를 가입신청, 변경, 해지, 상품, 요금, 배송, 결제, 통화품질, 기술지원, 기타 등 문의/불만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고객중심의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문의 및 불만사항은 상담원에 연결되어 이를 처리토록 한다.

② 문의/불만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불만유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고객불만 처리 전화번호 : 1899-6086、070-7772-2272

2.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대책

고객불만유형	처리 또는 해결방안	처리시간
가입 신청 (가입 정보 혹은 개통 오류)	• 민원 접수 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2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 2일 이내
요금 (가격 문의, 빌링 오류 등)	• 민원 접수 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3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 3일 이내
상품 (단말 불량 등)	•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단말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 불량 원인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함 • 단,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단말 Fault 등은 이용약관에 의거 관련 비용을 청구함.	• 2일 이내
배송 (상품, 청구서 등)	•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재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송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 2일 이내
통화 품질/ 네트워크 오류	• 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 방향 안내 및 3일 이내에 통화 불량 원인을 설명하고, • 7일 이내 해결 및 고객 통보를 원칙으로 함. 통화품질 개선이 어려울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힘. 필요시, 이용 약관에 의거 환불 조치함	• 7일 이내
결제	• 민원 접수 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파악 후, 2일 이내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환불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 환불 조치	• 5일 이내
서비스 이용 (서비스 방법 문의 등)	• 상담원이 상시 전화 응대 및 웹사이트에 서비스 고지 및 게시판 운영	• 문의 즉시 안내
명의 도용 (고객 정보 유출 등)	• 즉시 조사착수 및 결과의 개선사항 통보	• 3일 이내
해지 관련 (서비스 이용 정지, 해지 등)	• 당사의 원인으로 발생한 장애 혹은 책임으로 인해 서비스 정지(해지)에 대해 고객 요청 시, •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 손해배상 실시	• 장애 등 당사 책임 발생 시, 즉시 안내 및 처리
CS응대 (응답 전화상의 질의 및 불만)	• 불만사항 접수창구를 만들어 확인,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 2일 이내